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 방향*

박채진(주저자)
NH농협금융지주 NH금융연구소 연구원
(cjtwins@nonghyup.com)
류두진(교신저자)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sharpijin@skku.edu)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을 의미하는 핀테크의 등장과 함께,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출범하였다. 대표적인 ICT 기업이 설립하여 운영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자사의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완전한 비대면 거래를 지향한다. 또한, 과격적인 금리 혜택을 제공하고 다양한 고객 서비스를 제시하며 기존 은행의 전통적 영업방식을 변화시키고, 핀테크와 인공지능기술 및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차세대 금융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은산분리의 규제, 지원정책과 관련 제도의 미비, 혁신성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은 정체될 수도 있다. 본 논문은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을 조사하고,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사례와 제도를 분석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의 방향을 개괄적으로 제시한다. 해외의 주요 인터넷전문은행은 적절한 규제와 지원정책 및 제도하에서, 계열사와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거나 ICT 기업이 보유한 자본과 기술력으로 핀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당 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며, 전통적 은행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금융산업 전반에 요구되는 혁신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는 필요하되, 잠재적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에 의해 핀테크와 신기술의 활용이 적극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주제어: 금융규제, 금융산업, 인터넷전문은행, 핀테크

I. 서론

금융과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융합이 금융서비스의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세계 금융산업의 새로운 흐름이 되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추세(trend)와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인터넷전문은행(Internet-only Bank)¹⁾이 성공적인 런칭

(launching)을 하고 활발한 영업을 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국내에도 ICT의 접목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발전과 혁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형태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2015년에 발표하였다.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뜻하는 핀테크(FinTech)라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으로 혁신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2017년 4월, 국내 최초의 인터넷

최초투고일: 2018. 2. 6 수정일: (1차: 2018. 4. 9) 게재확정일: 2018. 4. 16

* 본 연구에 대하여 유익한 조언과 도움을 주신 KCERN 이민화 교수님, NH금융연구소 송두한 소장님, 오정윤 팀장님, 숭실대학교 양희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의 주장은 NH농협금융지주 및 NH금융연구소의 공식견해와 무관한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 둡니다. 이 논문은 2017년도 산학협동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임.

1) 설립 초기에는 물리적 점포 없이 온라인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Virtual bank, Pure-play Internet bank, Direct bank, Online-only bank 등으로도 불리며, 최근에는 모바일 채널의 등장으로 Digital bank로 칭하기도 한다(출처: 금융위원회 금융용어사전).

전문은행인 케이뱅크은행(이하, 케이뱅크)이 치밀한 준비 끝에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우리나라에 새로운 은행이 은행업 인가를 받게 된 것은 1992년 평화은행 이후 약 25년 만의 일이다. 뒤이어 2017년 7월에는 한국카카오은행(이하, 카카오뱅크)이 영업을 시작하면서 두 인터넷전문은행의 본격적인 경쟁의 관계가 이루어졌다. 소위 '메기 효과'로 비유되는 대형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은 은행의 전통적 영업 방식을 변화시키며 핀테크 및 인공지능에 기반을 둔 신기술의 접목을 통한 금융서비스의 혁신과 활용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전문은행 및 관련된 초기 기술의 도입이 이루어진 미국과 일본 등의 경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인터넷전문은행 및 관련 산업 진출에 상대적으로 뒤처진다. 국내 ICT 기술의 눈부신 약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핀테크 산업의 발전, 인터넷뱅킹 서비스의 비약적인 성장, 그리고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요구 등을 고려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뒤늦은 진출은, 그동안 제도와 비즈니스 환경, 그리고 산업계의 관련 인식이 상대적으로 미비하였음을 반영한다. 영업 개시 이후 우리나라의 두 인터넷전문은행은 폭발적으로 고객을 유치하기 시작하였고,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충하는 등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대형 금융회사들과의 치열한 경쟁의 구도 하에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금융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시중은행이 수행하는 대면거래 위주의 영업방식에서 벗어나, 고객이 매일 24시간 다양한 은행서비스를 비대면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포 없는 은행'을 지향한다. 기존에도 금융소비자는 진보되고 특화된 정보기술과 은행점포 및 매출의 다각화 전략을 바탕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

하여 편리하게 은행 및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으로 비로소 '은행업무의 완전한 비대면화'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 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고전적 의미의 인터넷뱅킹(Internet Banking)의 경우, 채널 다각화를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물리적 점포를 전혀 통하지 않고 완전히 비대면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전문은행과는 차이가 존재한다(강서진, 2014; 이대기, 2017; 이상복·왕상한, 2016).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배경에는 앞에서 언급하였듯, ICT와 금융서비스가 접목된 핀테크의 등장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있다(주강진·이민화·양희진·류두진, 2016). 하버드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인 클레이튼 M. 크리스텐슨이 90년대에 이미 제시한 '과격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의 맥락에서, 핀테크에 기반을 둔 인터넷전문은행은 전통적 금융기관과 비교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산업의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금융서비스의 혁신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한, 소위 '은산분리'로 대변되는 소유 및 지배구조의 문제와 자본시장 규제 및 제도와 관련된 상황과 현안은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 속도와 관련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이슈(issue)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에 필요한 과제를 해외 사례와 제도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혁신적인 ICT 기술과 상당한 규모의 모바일서비스 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나, 핀테크를 통한 금융서비스의 혁신은 미국이나 중국 등 다른 주요 국가와 비교하여 뒤처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고려하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규제환경 및 지원정책을 바탕으로 혁신기술과 핀테크를 통한 성장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와 제도의 개선을 통해 ICT 기업이 금융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관련 사례와 현황을 조사·연구한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초기 단계에 놓여있는 우리나라는 전통적 금융기관이 아닌 ICT 기업이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산업자본의 은행업에 대한 지분의 소유를 엄격히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로 인해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가적인 자본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주목한다. 또한, 대단위 영업망을 갖추고 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전통적인 금융기관 및 대형은행과 경쟁해야 하면서도, 인공지능과 핀테크와 같은 신기술을 통한 혁신, 빅데이터의 적극적 활용, 자금규모의 확장, 혁신적인 서비스의 제공, 규모의 경제 효과 실현 등을 충족시켜야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비즈니스환경을 고려하면, 제도적인 제약에도 직면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후발주자가 출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사례분석과 관련 규제 및 제도를 살펴본 후, 정책적 제언을 통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 방향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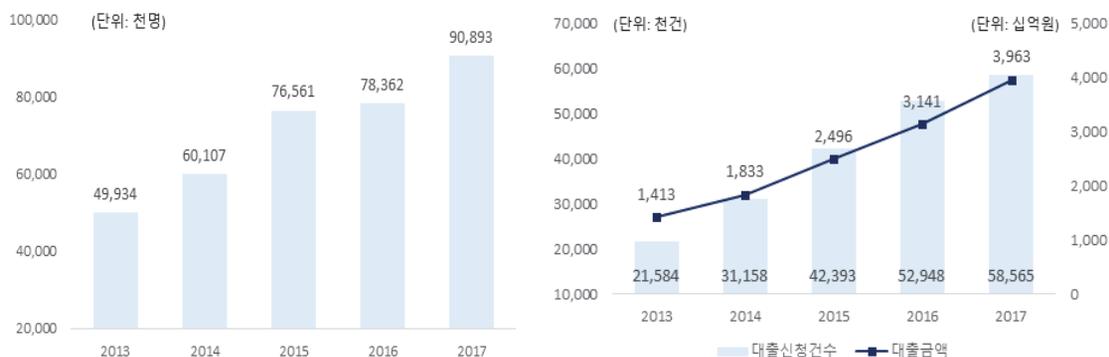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 배경, 3장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과 제도 및 사례를 조사한다. 4장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마지막 5장에서 논문의 결론을 맺는다.

II.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 배경

2.1 기존 연구

2.1.1 인터넷뱅킹 시장의 성장과 핀테크의 등장

인터넷뱅킹은 대면업무 위주의 전통적 영업방식에서 벗어나 비대면 채널로 소비자를 빠르게 흡수하고 있으며, 특히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현재는 온라인뱅킹을 넘어 스마트폰뱅킹 기반의 모바일뱅킹 금융서비스로 발전하면서(김규수·전봉걸, 2016; 이상기·김보영, 2015) 고객들이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개인의 스마트폰을 통해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금융소비자 중심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증대되었다. 더불어 인터넷뱅킹 시장의 성장은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갈망하는 젊은 금융소비자의 증가와 널리 보급된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완전한 비대면 금융서비스 제공'을 지향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등장의 배경이 된다. 한국은행의 2017년과 2018년도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의 출범 이후 모바일뱅킹의 이용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의 왼쪽은 모바일뱅킹 서비스의 등록고객 수 추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두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 2017년에, 등록고객 수가 다소 정체되어 있던 직전 2개년도인 2015년과 2016년의 경우와 비교하면 그 수가 상당히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림 1>의 오른쪽은 일평균 모바일뱅킹 서비스 대출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2013년부터 모바일뱅킹을 통한 대출의 규모는 꾸준히 상승추세에 놓여있으며, 2017년에는 일평균 396만 건, 3조 9천억원 규모의 대출이 이루어지면서(전년대비 각각 10.6%, 26.2% 증가) 연간 두 자릿수의 성장을 지



자료: 한국은행 (2018)

〈그림 1〉 모바일뱅킹 서비스 등록고객 수(좌) 및 일평균 대출실적(우) 추이

속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은 고객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간편하게 대출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모바일뱅킹의 이용 실적을 견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불어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융합을 의미하는 핀테크 산업의 등장으로, 전통적 금융서비스의 혁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다(김정환, 2017; 이광상, 2017; EY, 2017). 이는 금융기관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핀테크 기술의 등장으로 인하여 은행의 지점과 ATM기기의 소멸과 같은 영업방식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인공지능 스스로 학습하는 기계학습, 즉,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알고리즘을 접목한 로보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고객과의 상담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실시간(real-time)으로 답변을 제공하며 금융서비스에 변혁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7c; 주장진·이민화·양희진·류두진, 2017; 최공필·안창현, 2016), 글로벌 IT기업이 주도하는 핀테크 산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새로운 경쟁자인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시중은행, 금융 및 비금융기관과의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김규수·전봉걸, 2016; 김은수, 2015; 조영서 2015).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이외에도 지급결제 및 간편송금, P2P(peer to peer) 대출, 크라우드 펀딩 등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벤처회사 및 스타트업이 등장하면서 핀테크의 금융융합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이며,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의 주요 금융기관들도 핀테크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특히 모바일뱅킹을 포괄하는 인터넷뱅킹의 발전으로 비대면거래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통 은행들은 대면거래 인력과 지점의 수를 축소하는 대신, 모바일을 통한 소비자의 접근성과 편리성을 강화하였다. 이는 곧 모바일 채널을 통한 은행간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교하고 맞춤형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결국 은행영업의 과제이자 경쟁력으로 고려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신생 핀테크 회사들이 간편결제와 간편송금 등을 장점으로 강조하면서 기존 은행의 업무를 빠르게 대체하며, 금융산업의 전

통적인 기능을 해체 및 분산하는, 소위, 언번들링(unbundling) 현상이 나타났다. 시장을 선점한 기존 대형은행과의 동등한 경쟁을 위한 혁신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소위,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격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에서 금융기관과 은행의 주요 과제로 부상한다(김우진, 2018).²⁾ 이에 대형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해외 글로벌 투자은행도 디지털로 금융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관련 전략을 다각도로 수립하고 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금융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를 다루는 혁신적 기술을 더해 디지털 역량을 강화한 사업모델을 마련하거나, 분산된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하고,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애자일(agile)' 조직³⁾을 구성하는 등 디지털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ICT 기업의 주도로 운영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100% 비대면화를 지향함에 따라 편의성을 높이고 직관성을 강화한 플랫폼은 생존을 위한 경쟁력 그 자체로 인식되고 있으며, 자사의 ICT 역량을 활용해 기존의 금융기관에 대응하기 위해 차별화된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핀테크를 통한 성장을 논의하기 위한 국내의 제도와 비즈니스 환경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EY(2017)가 발표한 2017 핀테크 도입지수(Fintech Adoption Index 2017)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핀테크 도입률은 32%로 미국, 영국, 일본 등 총 20개 조사대상 국가의 평균

수준(33%)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국은 약 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산업이 빠르게 재편되는 현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도 핀테크 활성화를 지속해서 유도하고 있으나, 규제 및 제도로 인한 한계에 봉착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김자봉(2015)에 따르면, 핀테크가 활성화되어 있는 해외의 경우 원칙 중심의 체계를 고수하고 있어 세부규정의 과도한 제약을 받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사업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특히 정부와 관료의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ICT 환경이 기반이 되는 현 핀테크 산업의 발전이 더딘 이유는 규정 중심의 규제에 의해 핀테크 혁신기업의 시장진입 장벽을 높여 성장을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2.1.2 인터넷전문은행의 등장과 변천

인터넷전문은행이 비교적 일찍 출범한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인터넷전문은행과 인터넷뱅크의 성과를 비교하는 다수의 사례연구가 수행되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ICT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보급률의 증가 등에 힘입어 미국에서 최초로 설립되어 이후 영국과 일본 등의 다른 선진국으로 퍼졌다(서병호, 2015).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중반 세계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Security First Network Bank가 설립된 이후, 2000년대 중반에는 20개 이상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존재하였다(구본성, 2008; 이시

2) 디지털 전환에 대하여, A.T. Kearney(2016)는 디지털 신기술의 등장에 따라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기업이 현재 추진 중인 비즈니스를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며,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고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한다(A.T. Kearney Korea 홈페이지 및 "Digital Transformation에 대한 오해와 5가지 진실", 2016 한국경제-A.T. Kearney Digital Business Forum 참고). 김민식·손가영(2017)은 기업들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고, 비즈니스 전반의 프로세스를 변화시킴으로써 혁신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3) 장은지(2018)는 애자일(agile) 조직은 중장기 전략수립을 위한 과거의 전통적 조직체계와는 달리, 급변하는 외부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한 단위조직의 단순하고 수평적인 구조를 이룬다고 정의하였다. 애자일 조직에서는 실패라는 리스크(risk)를 부담하더라도 시장의 상황 및 환경변화에 기민하고 민첩한(agile) 자세로 준비하고 대처하는 것이 특징이다.

직·이하정, 2015; DeYoung, 2001a). 미국은 2000년대 중반 20개 이상의 인터넷전문은행(virtual banks and thrifts)⁴⁾에 의해 영업이 이루어졌으나, 시장 점유율이 한 자리 숫자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영업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진행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미국 온라인뱅킹 시장의 5% 미만, 그리고 기존의 모든 인터넷뱅킹 이용 고객의 약 1% 정도만 인터넷전문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론적으로 무점포 영업방식을 통해 막대한 경상비용을 절감하여, 높은 금리를 제공하여 고객들의 편익을 증가시키며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의 상당수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저조한 수익성과 현실적인 운영의 어려움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DeYoung, 2001a, 2001b). Yom(2005)은 미국의 15개 인터넷전문은행(U.S. Internet Primary Banks)과 기존 은행의 수익성을 비교 조사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지점과 고객 대면창구를 운영하지 않음으로써 낮은 영

업비용으로 고객들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많은 종류의 은행거래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객들이 기존 은행들이 제공하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이동할 유인이 발생한다고 보았으나, ROA와 ROE 같은 회계 장부상의 수익성 지표가 은행 산업의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미국의 초기 인터넷전문은행은 적절한 수익모델 없이 지나친 금리경쟁에 치중하거나, 기존 은행과의 차별점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낮은 성과를 기록하면서 진입과 퇴출이 빠르게 이루어졌다(서병호, 2015; 이성복, 2015, 2016).

한편, 서병호·이수진·이윤석(2016)은 <표 1>과 같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초기 형태부터 가장 최근의 형태까지 사업의 모형을 총 3가지로 분류하고, 그에 따른 단계별 변화 과정을 제시한다. 그룹 1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초기의 무점포 형태(Internet Only Bank)⁵⁾를 채택하고 있으며, 미국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초기 사업자인 NetBank와 NextBank가 해당된다. 그룹 2는 소수의 영업점을 보유하면서 온

<표 1> 인터넷전문은행 단계별 발전 과정

구분	인가 형태	서비스 방식	해외 사례
그룹 1: 2000년대 이전 (Internet Only Bank)	연방저축은행, 국법은행 등	무점포 형태 (신용카드 전업은행)	NetBank, NextBank (미국)
그룹 2: 2000년~2007년 (Internet Primary Bank)	국법은행	기분 무점포 형태 + 영업점을 통한 WM, PB 서비스 등 제공	Charles Schwab Bank, Lydian Private Bank (미국)
그룹 3: 2007년 이후 (Mobile Bank; Digital Bank)	상업은행, 시중은행	전통적 은행 영업방식에서 탈피 → ICT기술 적극 활용	Jibun Bank (일본) Fidor Bank (독일)

주) 서병호 외(2016)의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였음.

4) 은행업과 저축은행업을 영위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을 말한다(서병호 외, 2016; DeYoung, 2001b).

5)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초기 단계로 무점포 형태의 영업방식을 지향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Internet-only Bank로 칭하고자 한다.

라인 점포와 보완적 관계로 사업을 영위하는 인터넷 전문은행(Internet Primary Bank)으로, Charles Schwab Bank와 Lydian Private Bank가 해당한다. 그룹 2의 인터넷전문은행은 기본적으로 무점포 방식을 고수하지만, wealth management와 private banking과 같은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부 오프라인 영업점을 개설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룹 1과 그룹 2에 해당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기존의 오프라인 점포를 통한 영업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으로 채널을 다각화하는 등 점포 전략 위주의 형태를 제시하였다면, 그룹 3은 채널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IT 기술도입 등 전통적인 은행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하여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한 인터넷전문은행(Mobile Bank 및 Digital Bank)이 해당되며, 일본의 지분은행(Jibun Bank)과 독일의 피도르은행(Fidor Bank)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된다.

2.2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배경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에 비해 인터넷전문은행 진입이 비교적 늦게 이루어졌으나, 도입을 위한 논의는 2000년대 초부터 진행되었다. 당시, SK텔레콤, 코오롱, 롯데와 같은 대기업과 안철수연구소 같은 벤처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브이뱅크(V-Bank, 가칭)'라는 국내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였으나, 은산분리 규제, 금융실명제법, 자금확보 문제 등으로 인하여 논의가 무산되었다. 이후 2007년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

(Task Force)를 운영하였으며, 2008년에 은행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지만, 이 역시 글로벌 금융 위기 촉발로 인하여 은행 건전성 문제 등이 떠오르면서 결국 논의가 중단되었다. 정부는 검토의견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시중은행의 재무건전성이 위협받는 상태였기 때문에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으로 은행 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도입을 보류하였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5a).

이후 ICT와 금융의 융합을 뜻하는 핀테크가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함께 부상하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문제가 다시 점화되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을 2015년 금융개혁의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였으며(금융위원회, 2015a), 같은 해 6월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하였다. 도입방안 발표 약 3개월 후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에 따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아이뱅크의 3개의 컨소시엄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Two-track approach' 방식을 채택하여 현행법과 제도하에서 성공 가능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test-bed)로 활용하기 위하여 소수의 사업자를 시범적으로 인가한 다음, 관련 규제와 제도가 정비된 이후 추가 사업자를 인가하고, 핀테크 업체 등 다양한 기업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표 2〉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추진 경과를 나타낸다. 금융위원회는 3개 컨소시엄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심사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 위원회에 심사⁶⁾를 의뢰하여 예비인가를 의결하기로

6) 금융감독원에서는 은행법 등에 의거 충족요건 등의 적격성을 집중적으로 심사하며, 외부평가위원회에서는 ① 자본금 규모 및 자금조달 계획, ② 대주주 적격성, 은행주주 적합성 등 구성계획, ③ 사업 계획(주요 확인사항과 기타 확인사항으로 분류), ④ 인력 및 영업 시설 보유·전산체계 등의 물적 설비를 평가항목으로 구성하였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5c).

〈표 2〉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과정

일시	주요 내용
2015년 1월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의 국내 도입을 주요 핵심과제 중 하나로 선정
2015년 6월	금융위원회,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발표
2015년 10월	총 3개 컨소시엄 사업자 예비인가 신청서 제출 (카카오, 케이뱅크, 아이뱅크)
2015년 11월	〈외부평가위원회〉 구성 / 금융위원회, 카카오뱅크 및 케이뱅크 예비인가
2015년 12월	카카오뱅크 및 케이뱅크(예비인가 사업자), 은행 설립작업 착수
2016년 9월	케이뱅크,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
2016년 12월	금융위원회, 케이뱅크 은행업 인가
2017년 1월	카카오뱅크,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
2017년 4월	케이뱅크 영업 시작 / 금융위원회, 카카오뱅크 은행업 인가
2017년 7월	카카오뱅크 영업 시작

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6, 2017a)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발표했다. 특히 인가심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은행업 인가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취지와 특수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기준으로 평가한다.⁷⁾ 외부평가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컨소시엄에 대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예비인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서가 금융당국에 제출되었다. 케이뱅크의 경우 빅데이터 기반의 중금리대출, 로보어드바이저를 이용한 자산관리 서비스 등의 사업에서, 카카오뱅크는 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을 이용한 중금리대출, 플랫폼 ‘카카오톡’을 이용한 간편송금 서비스 등에서 우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다.⁸⁾ 두 인터넷전문은행은 ICT의 강점을 이용하여 빅데이터 기반의 차별화된 중금리 시장조성, 자산관리서비스, 송금서비스 등을 핵심

사업모델로 제시하였고, 이후 케이뱅크는 2016년 12월, 카카오뱅크는 2017년 4월에 각각 본인가를 받으면서 은행영업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였다.

마침내 2017년 4월, 국내 첫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3개월 뒤 7월에는 카카오뱅크가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였다. 〈표 3〉은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본인가 당시 현황을 나타낸다. 케이뱅크는 2,500억원, 카카오뱅크는 3,000억원의 초기 자본금으로 설립되었으며, 각각 300명 이내로 인력을 구성하였다. 두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금리 시장진출을 통해 금리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하며,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을 이용하여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다.

7) 평가항목 중 사업계획에는 ① 계획의 혁신성, ② 사업모델의 안정성, ③ 금융소비자의 편익증대, ④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에 기여, ⑤ 해외 진출의 가능성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무점포 영업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사기준(전산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자금공급체계 등)을 중점 평가사항으로 추가하였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5c).

8) 아이뱅크 컨소시엄의 경우 자영업자에 집중된 대출방식이 향후 안정적 사업운영을 위한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평가하여 인가를 권고하지 않았다.

〈표 3〉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비교

구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법인명	주식회사 케이뱅크은행	한국카카오은행 주식회사
영업개시일	2017년 4월	2017년 7월
대표명	심상훈	이용우, 윤호영
설립자본금	2,500억원	3,000억원
주주 구성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 GS리테일, KG모빌리언스, KG이니스시스, 한화생명보험, 에잇퍼센트, 다날 등 21개 사업자	한국투자금융지주, 카카오, KB국민은행, 넷마블, 우정사업본부, 이베이코리아, SGI 서울보증, Yes24, Skyblue (9개 사업자)
임직원 수	약 200명	약 270명
핵심 서비스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직불 간편결제, 간편심사 소액대출, 체크카드, 킥송금 등	간편심사 소액대출, 소상공인 소액대출, 간편송금, 간편해외송금 등

주) 영업개시일을 제외한 내용은 본인이 당시 기준으로, 각 社 공시자료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6, 2017a)을 참고하였음.

2.3 국가별 법 및 제도 관련 현황

2.3.1 국내의 제도 및 환경

인터넷전문은행은 현행 은행법상 일반은행으로 분류되어 시중은행과 동일한 규제와 영업범위 등을 적용받으며, 영업특성을 고려하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무를 통해 은행업을 영위하여야 한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5b, 2015d). 다만, 은행건전성과 관련한 규제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현재는 설립 초기 단계에 놓여있음을 고려하여, 2015년 금융위원회가 자본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바젤 위원회의 권고기준에 따라 바젤Ⅲ 적용을 받는 일반 은행과 달리, 사업의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

에 한계가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유예를 두어 2019년까지는 바젤 I 을 기준으로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자기자본비율을 산출하도록 규정하였다(강현구·유주선·이성남, 2017). 인터넷전문은행은 이후 2020년부터 바젤Ⅲ를 단계적으로 적용받게 되며, 2023년에 규제가 전면 적용되어 시중은행과 같은 기준으로 자기자본비율을 계산하게 된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5d).⁹⁾ 더불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하여 유동성커버리지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을 특수은행과 동일한 비율로 적용받도록 하였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요 지분은 은행, 금융지주회사 등 금융권에 귀속되어 있지만, 사실상의 운영이 ICT 기업에 의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은산분리 규제 등으로 인한 사업 확장 등의 제약이 큰 상황이다.

9) 인터넷전문은행을 자회사로 두고 은행지주회사로 전환되는 금융지주회사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5d).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이에 해당한다. 바젤Ⅲ 기준은 ①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자기자본비율 현행 8% 이상 유지, ② 보통투자자본비율 4.5% 이상 유지, ③ 기본자본비율(Tier 1) 6% 이상 유지, ④ 은행의 미래 위기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고정완충자본 적립 (2016년부터 매년 0.625%p씩 적립하여 2019년 2.5% 확보), 그리고 ⑤ Tier 1자본을 총자산으로 나눈 레버리지비율을 3% 이상 유지하는 것이다(김병덕, 2010).

‘은산분리’ 원칙에 따라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본)의 은행지분 소유를 의결권이 있는 경우 최대 4%까지만 허용하도록 규정한다.¹⁰⁾ 이에 일부 국회의원이 은행법 개정안 2건,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 3건을 각각 발의하였으나, 모두 정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된 상황이다. 은산분리에 대해서는 제도적 완화 문제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찬성과 반대의 첨예한 대립이 있다. 은산분리의 완화를 주장하는 찬성의 관점은 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을 위해서는 ICT 기업 등 새로운 시장참여자의 주도에 의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맥락을 같이 한다. 특히 ICT 기업 등 비금융주력자들이 은행지분을 4%밖에 취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시장에 참여할 유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주장이 존재한다(이시직 · 이하정, 2015; 조정래, 2016).

은산분리를 반대하는 의견은 주로 대주주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움직이는, 소위 대주주의 ‘사금고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도 설립 규정상 시중은행과 같은 은행법을 적용받고 있으므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만 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다. 또한, 핀테크 등 금융서비스의 혁신은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하지 않아도 충분히 제공 가능하며, ICT 기업이 아닌 금융기관들도 기술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는 관점도 존재한다.¹¹⁾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7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연내 세 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을 위한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특혜 문제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의 인가 절차를 재검토하는 방안이 논의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은산분리 기조의 완화에 대한 상충되는 입장이 양쪽의 전문가 모두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대립하는 상황에서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규모 확장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 및 방향을 결정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2.3.2 해외의 제도 및 환경

미국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당시에는 상업은행, 저축은행, 그리고 산업자본이 주도한 ILC(Industrial Loan Company)¹²⁾ 등의 형태로 인가를 받았다(서병호, 2015). 또한, 초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시 통화감독청(OCC;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이 새로운 형태의 은행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신중하게 인가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일부 은행에 대해서는 통화감독청이 은행의 사업영역을 제한하는 등 조건부 형태의 인가가 이루어졌다(이수진, 2015a). 미국은 1956년 제정된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에 따라 산업자본이 은행의결권의 25%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은산분리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조대형, 2016). 또한, 기존에는 전통적 은행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인가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인터넷전문은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2001년 통화감독청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관련 인

10) 은행법 제16조의2 ① 비금융주력자는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1) 금융주력자에 속하는 금융기관들이 전문인력을 채용함으로써 혁신을 주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고동원, 2017).

12) 이는 미국의 일부 주에서만 허용되었는데, 특정 금융업무만을 위주로 운영하였다가 이후 현재는 금융지주회사 설치, 혹은 산업자본의 매각을 통해 상업은행이나 저축은행의 형태로 전환된 경우(서병호, 2015)로서, 2010년 『Dodd-Frank Act』 제정 이후에는 인가가 금지되었다(조대형, 20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LC 형태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기로 한다.

가지침¹³⁾을 발표함에 따라 전자뱅킹 업무수행에 따른 관련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심사하였다(천대중, 2014b).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은행조정 지침(2nd Banking Coordination Directive, 1989)에 의하여 규제를 적용받는데, 해당 지침에서는 비금융주력자인 일반기업의 은행지분 보유 규모나 한도에 대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지만 적격보유(qualifying holding)¹⁴⁾를 위해서는 감독당국에 지분규모를 통지해야 하며, 지분규모가 각각 20%, 33%, 50%를 초과하여 비금융주력자가 해당 은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하다(서병호, 2011). 또한, EU 지역 내에 속한 은행들이 사업의 확장을 위한 해외 진출 시 EU 패스포트(EU passport) 규정에 따라 유럽연합 내 다른 국가로의 진출이 가능하다. 이를 이용하여 대형은행이 타 EU 국가로의 진출 시 주로 은행의 독립 사업부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였다(서병호, 2015; 전주용·여은정, 2015). 더불어 유럽 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는 유럽은행감독청(EBA: European Banking Authority)에 의하여 일반은행과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김은수, 2015).

일본의 경우 은행 혹은 은행지주회사 전체 의결권의 5% 이상을 보유할 경우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 은행의결권 보유신고서를 금융청장에 제출 및 보고해야 한다. 더불어 일본 은행법상에서는 전체 의결권의 20% 이상을 보유하는 주주의 경우를 회사의 재무 및 영업 결정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주주'로 명시하고 있는데, 주요주주가 되

기 위해서는 금융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은행법에 명시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은산분리에 대한 규제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과거 금융청의 인가 사례를 살펴보면 비금융주력자인 일반사업회사의 은행 지배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인다(조정래, 2015). 다만, 2000년 금융청에서 '타업종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하는 운영지침을 마련함에 따라 비금융주력자도 은행의 주요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서영미, 2015; 정희수, 2015). 만약 비금융주력자가 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은행법(제52조)에 따라 해당 은행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대주주에 대하여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계획의 제출의무 등 사후적인 통제장치를 통해 엄격히 관리된다(이시직·이하정, 2015).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전통적 은행과는 다르게 금융리스크에 노출될 위험을 고려하여 일본 금융당국에서는 시스템의 안정성, 대량인출사태 등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태호·박태형·임종인, 2008; 이상복·왕상한, 2016).

중국을 핀테크를 이용한 금융서비스의 비약적인 발전을 통해 세계시장에서도 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이윤숙·신미경, 2016), 알리페이(Alipay), 위챗페이(WeChat Pay) 등 모바일 지급결제시장을 중심으로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인다(서봉교, 2017). 이처럼 핀테크의 발전이 중국 금융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불러일으킴에 따라 인민은행은 인터넷을 통한 금융서비스가 금융중개의 효율성을 향상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한편, 관련 정부 부처와 2015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터넷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

13) 가이드라인에는 ① 1개 이상의 물리적인 영업점 설치, ② 기본자기자본(Tier 1) 비율 8% 이상, ③ 유동성 리스크 등에 대비한 자금조달계획 마련, ④ 대안적 사업전략 수립, ⑤ 계좌개설 시 고객확인 안정성, 그리고 ⑥ 재해발생에 대비한 복구계획 마련 등이 포함된다(구본성, 2008; 서병호, 2015; 조대형, 2016).

14) 투자대상기업의 자본금이나 의결권의 10% 이상을 보유하거나 해당 기업에서 중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서병호, 2011).

하고자 하였다. 이후에도 핀테크위원회 설립(2017년 5월), 중국 금융업정보기술 계획발표(2017년 6월)에 이어 인터넷 금융의 관리·감독 방향(2017년 8월)을 제시하는 등 투명한 인터넷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핀테크의 성장 속에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한국은행, 2017a). 특히 '포용적 금융'이라는 기조에 따라 중국 금융업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당국은 전통적 금융기관이 아닌 비금융기업들도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터넷 금융시장 속에서 핀테크를 통한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전수경, 2018).

한편, 중국의 경우 정부주도의 경제계획으로 금융산업 및 관련 산업에 대한 통제 및 지배가 가능한 상황이라, 은산분리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규제 조항은 부재하며, 2014년 이후 민간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 등 민영은행의 설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이는 주로 국유자본 위주로 운영되는 은행업을 혁신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불어 민간 인터넷전문은행을 통하여 자금이 효율적으로 공급되도록 하였다(이상복·왕상한, 2016; 이은영, 2017). 다만, 중국 금융당국이 중국 인민의 위안화 은행계좌를 I, II, III종으로 분류¹⁵⁾함으로써, I종 계좌개설을 하지 못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소액 여신서비스 등으로 제한된다(자본시장연구원, 2017).

III. 국내 및 해외의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3.1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인터넷전문은행은 출범 당시 저금리 기조 고착화, 스마트폰뱅킹과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게 100% 완전한 비대면 방식을 통하여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출범하여, 현재까지 꾸준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한국은행, 2018). 케이뱅크에는 2018년 3월 현재 약 70만명 이상이 가입했지만, 3개월 늦게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영업개시 이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가입자 수 1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현재는 약 567만 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¹⁶⁾ 특히 카카오뱅크의 경우 대주주인 카카오의 UX(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 및 UI(User Interface: 사용자 환경)를 이용하여 직관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인 '카카오프렌즈 체크카드' 등을 출시하면서 젊은 소비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주효했으며, 그 결과 카드발급 2개월 후 280만 장을 돌파하였다.¹⁷⁾ 또한, 출범 초기 인터넷전문은행이 비용 절감을 통하여 시중은행 대비 경쟁력 있는 여·수신상품을 제공함에 따라 케이뱅크는 출범 70일 기준으로 수신 5,200억, 여신 4,800억, 도합 1조원을 달성하면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카카오뱅크는 출범 약 한 달 만에 여·수신 금액 3조원을 기록하며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다.

이렇게 인터넷전문은행 주도의 금리혜택 경쟁과

15) I종은 전체 은행업무가 가능하지만, 계좌개설의 경우 대면개설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하며, II종은 대면,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한편, III종은 소액 소비 및 결제기능만 존재하며, 대면, 비대면 계좌의 개설이 모두 불가능하다(자본시장연구원, 2017).

16) 국민일보(2018년 4월), '인터넷은행 1년... 몸집 불렀는데 적자, 중금리 대출 억제' 및 2017년 4분기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일 반현황을 참고하였음.

17) 동아일보(2017년 10월), '주택대출... 보험... 신용카드... 인터넷은행 거침없는 영토확장'을 참고하였음.

핀테크를 접목한 기술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시중 은행도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은행들은 금리 경쟁력을 높인 금융상품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한 금융상담 서비스,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모델 등 핀테크 기술을 접목한 금융서비스를 앞당겨 출시하거나 오프라인 점포의 축소, 유연근무제 도입 등의 가시적 변화들이 생겨났다. 더불어 은행과 산업 자본의 협업을 통해 핀테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생겨나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력 제고를 더욱 촉진하고 있다.¹⁸⁾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초기 자본금으로는 수수료 면제, 낮은 대출금리 등 시중은행 대비 경쟁력 있는 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급증하는 대출규모를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업무를 개시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일부 서비스(케이뱅크 '직장인 신용대출')를 일시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기도 했다. 이에 각 인터넷전문은행에서는 출범 이후 빠른 시기에 자본금 마련을 위한 유상증자 논의가 이루어졌다. 카카오뱅크는 영업 시작 1개월 내에 자본금 확충을 결정짓고 9월 5일 5,000억의 유상증자를 단행하였으며, 케이뱅크의 경우 뒤이은 9월 27일 1,000억 규모의 증자를 통해 자본금을 확보하였다.

한편, <표 4>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2017년 말 케이뱅크의 자본금은 약

3,500억원, 카카오뱅크의 경우 빠른 자본확충을 통해 약 8,000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더불어 카카오뱅크는 2018년에는 5,000억원 규모의 추가 유상증자 계획을 발표하였고, 케이뱅크는 현재 1,500억 이상의 자본금 확보를 위한 유상증자를 논의한다.¹⁹⁾ 2017년 인터넷전문은행별 여·수신실적을 살펴보면, 케이뱅크는 총수신 1조 889억원, 총여신 8,559억원을 기록했지만, 카카오뱅크는 총수신 5조 483억원, 총여신 4조 6,218억원으로 케이뱅크를 웃도는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은행 설립 초기 단계로 인한 판매관리비 증가 및 '수수료 무료' 정책에 따른 수수료비용의 지출로 인하여 두 인터넷전문은행 모두 이자수익을 웃도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이에 각 인터넷전문은행은 성과 제고를 위한 경영 전략 방향을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케이뱅크는 2017년 9월 건전성 확보를 위한 여신 할당제 도입, 완전한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모바일 및 온라인에서 보험상품을 비교·가입할 수 있는 모바일 방카슈랑스 상품을 출시하였다. 뒤이어 2018년 4월에는 풀뱅킹(full banking) 서비스를 갖추기 위하여 자본확충을 통해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겠다고 밝혔다.

<표 4> 인터넷전문은행 경영실적(2017년 12월 기준)

구분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납입자본	3,500억원	8,000억원
총수신	1조 889억원	5조 483억원
총여신	8,559억원	4조 6,218억원
당기순손익	(838억원)	(1,045억원)

자료: 각 사 2017년 경영공시자료 및 은행연합회 공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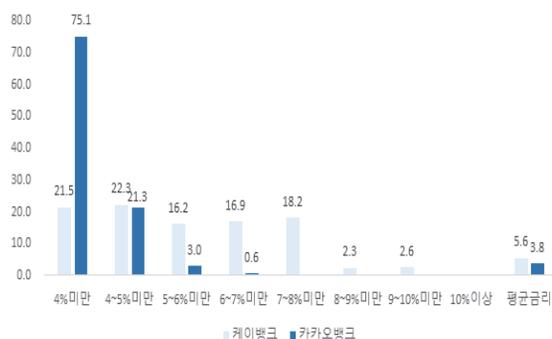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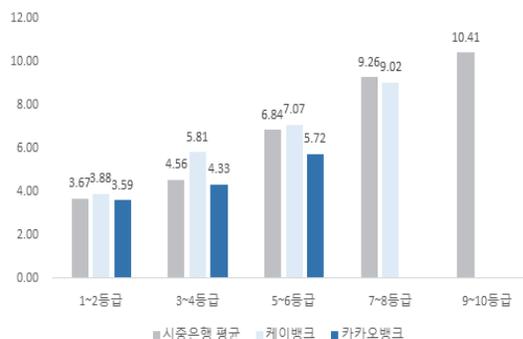
18) 하나금융지주가 51%, SK텔레콤이 49%의 지분으로 합작 설립한 '핀크(Finqq)'의 사례이다.

19) 이데일리(2018년 4월), "케이뱅크, 5월말 1,500억 이상 증자...상품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참고.

카카오뱅크의 경우 2017년 11월 출범 100일을 맞이하여 2018년 주요 추진과제로 전·월세 대출상품 서비스 출시, 신용카드 사업, 계좌이동제, 펌뱅킹/가상계좌 서비스 등의 신사업을 시행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카카오뱅크는 2018년 1월에 전·월세 대출상품을 시범 운영 목적으로 출시하였는데, 이 서비스는 시중은행 대비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100% 비대면으로 거래가 이루어짐에 따라 40대 이하 주요 수요층에 크게 인기를 끌며 약 2개월 만에 대출 약정 규모 1,000억 원을 돌파하였다.²⁰⁾ 또한, 카카오뱅크는 5,000억 원 추가 유상증자가 확정됨에 따라 전·월세 대출을 상시판매로 전환함과 동시에 대출 규모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으며, 더불어 향후 신용카드 등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한편,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여신 및 수신 금리 정책은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당면 과제 중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이 단행된 2017년 12월 중순 이전부터 각 은행이 일제히 금리를 미리 조정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 또한 금리를 인상하였다. 은행연합회의 은행 금리 비교공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 현재 수신금리의 경우(1년 만기 예금상품 기준) 시중은행은 최대 2.0% 수준까지 금리를 제공하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시중은행 대비 높은 2.2%의 금리를 제공한다.²¹⁾ 여신금리의 경우(일반신용대출 기준) 케이뱅크는 5.55%(중금리 대출상품 제외 시, 금리 평균 4.51%), 카카오뱅크는 평균 3.81%의 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의 왼쪽에서는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금리를 비교한다. 상위 신용등급인 1~2등급 대상의 신용대출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금리 구조를 형성하였으나, 3~4등급, 그리



자료: 은행연합회 대출금리 공시자료(2018년 3월)

<그림 2>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의 일반신용대출 금리(좌) 및 인터넷전문은행 일반신용대출 금리 구간별 취급 비중(우) 비교

20) 이데일리(2018년 3월),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약정액 1000억원 돌파'를 참고.

21) 시중은행(특수은행 제외)을 기준으로 함.

고 5~6등급의 신용대출의 경우 카카오뱅크의 대출 상품이 경쟁우위의 금리를 제공한다. 한편, 케이뱅크는 카카오뱅크나 타 시중은행에 비해 높은 대출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낮은 신용등급인 7~8등급의 고객을 대상으로 보았을 때 시중은행보다 비교적 낮은 금리 수준에서 중금리 공백을 일부나마 해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의 오른쪽은 2018년 3월을 기준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제공하는 일반신용대출의 금리 구간별 취급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²²⁾ 카카오뱅크의 경우 5% 미만의 대출금리를 제공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비교적 높은 신용등급의 고객에게 활발히 대출이 이루어짐을 의미한다.²³⁾ 한편, 케이뱅크는 비교적 고른 수준에서 신용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으나, 여전히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예대차익을 위주로 하는 수익구조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여겨진다. 즉, 현재의 인터넷전문은행은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행태에 자금이 몰려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과 큰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한국은행, 2017b). 게다가, 인터넷전문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 저금리 기조가 종료됨에 따라 수신 및 여신금리 구조에 대한 변동이 발생하면 신용대출, 중금리대출, 향후 취급 예정인 주택담보대출 등 시중은행과 어떻게 차별화된 상품과 금리를 제공할 것인지가 중요 현안일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곧 인터넷전문은행만의 경쟁력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암시한다.

3.2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현황

3.2.1 미국

미국의 경우 1995년 SFNB(Security First Network Bank)가 세계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설립된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는 다수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존재하였다. 초기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주로 은행이나 금융그룹 계열사가 아닌, 모회사가 없는 회사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되는 과정에서, 고객 유치를 위하여 공격적인 예금금리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수하였다. 그러나, 결국 수익성 악화와 수익모델 발굴에 실패하는 등의 이유로 초기에 사업을 중단하면서 초기 인터넷전문은행들의 진입과 퇴출이 빠른 시기에 이루어졌다(이상복·왕상한, 2016; 이시직·이하정, 2015). <표 5>는 미국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을 나타낸다. 많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증권, 카드, 보험 등 비은행권 금융회사에 의해 설립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제조기업 등 비금융회사가 설립한 인터넷전문은행도 다수 존재한다. 미국 최대의 인터넷전문은행인 Charles Schwab Bank를 포함하여 여러 인터넷전문은행이 비은행금융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설립되어 주로 해당 모기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특정 분야에 특화된 방식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서병호, 2015; 천대중, 2014b).

22) 은행연합회에서는 매월 18개 전국 은행(인터넷전문은행 포함)의 일반신용대출 금리를 공시하고 있다. 일반신용대출은 담보가 없는 가계대출을 의미한다(출처: 은행연합회).

23) 카카오뱅크의 경우 SGI서울보증의 신용평가모형을 통하여 중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중금리 대출을 실시하고 있어 SGI서울보증과의 제휴를 통한 중금리 실적은 은행연합회의 신용대출 공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출처: 머니투데이, '중금리 대출시장, 카카오뱅크-케이뱅크 잇갈린 행보'). 따라서, 은행연합회 자료만을 대상으로 카카오뱅크가 중금리 대출시장에서의 공급자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또한, 카카오뱅크는 2019년을 목표로 차별화된 신용평가모형을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다(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 2017b).

〈표 5〉 미국 인터넷전문은행 일반현황

법인명	설립연도	설립 주체
E*Trade Bank	1993	비은행권 금융회사 (증권회사)
Charles Schwab Bank	2003	
Discover Bank	1911	비은행권 금융회사 (카드사)
Green Dot Bank	1978	
American Express Bank	2000	
Barclays Bank Delaware	2001	
Principal Bank	1998	비은행권 금융회사 (보험회사)
Nationwide Bank	1998	
State Farm Bank	1999	
First Internet Bank	1998	기타 (비금융회사, 독립계)
Everbank	1998	
BMW Bank of NA	1999	
Bofl Federal Bank	2000	
The Bancorp Bank	2000	
Bridge Bank	2001	
Ally Bank	2004	

주) Bridge Bank는 2015년 Western Alliance Bank에 인수되었으며, 현재는 Western Alliance Bank의 사업부(division)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각 은행의 설립연도와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개시 연도는 다를 수 있음. 서병호(2015), 서병호 외(2016), 이시적·이하정(2015), 천대중(2014b)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3.2.2 유럽

유럽의 경우 일반적으로 BNP Paribas, Credit Agricole, BBVA 등의 글로벌 대형은행이 해외 시장 진출²⁴⁾을 통하여 자산운용, 보험, 예금 등 자사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독립 사업부나 자회사의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다수 설립하였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5b; 서병호, 2015).

유럽의 대표적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독일의 Fidor Bank는 적은 인력으로도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지역 기반의 사회적 금융을 선도하고 있으며, 특

히 금융서비스에 핀테크와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고객을 유치한 성공적인 사업모델로 언급된다. Fidor Bank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출범하여 설립 당시부터 고객 중심의 새로운 은행서비스에 대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생겨났다. 이들은 물리적 지점을 보유하지 않은 대신 Facebook 등의 SNS와 YouTube를 이용해 채널의 효율성을 제고 하였으며(이상복·왕상한, 2016; 이수진, 2015b), 자체적으로 보유한 개방형 구조(open architecture) 기반의 'Fidor Operating System' 등 진보적 비즈니스 플랫폼을 개발하여 효율적으로

24) 특정 국가에서 은행업 인가를 받으면 EU지역 내의 다른 국가로 진출이 가능하다(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2015a).

금융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핀테크 인프라를 마련하고 있다(이대기, 2017; 홍승철, 2017; Latimore and Greer, 2015). 프랑스 BNP Paribas의 Hello Bank, 영국의 보험회사인 프루덴셜에 의해 설립된 Egg Bank 및 독일 Volkswagen Bank의 경우에는 모기업의 브랜드와 인프라를 활용하며, 미국의 Ally Bank는 자동차 담보대출 등 자동차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서병호, 2015).

3.2.3 일본

2000년 일본 금융청에서는 기존의 전통적 은행에서 다루지 않던 업무를 수행하는 은행을 통칭하여 '새로운 형태의 은행'으로 분류하였다. 여기에는 타 업종에 의한 은행 업무로의 진출, 편의점, 쇼핑센터 등 점포망의 ATM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 제공,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middle risk, middle return'의 대출방식, 그리고 별도의 점포망 없이 인터넷으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형태 등이 해당한다.²⁵⁾ 따라서 비대면 거래를 지향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은 이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들 역시 물리적 점포를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인터넷과 모바일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하여 금융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일본 인터넷전문은행은 2000년 재팬넷은행(Japan Net Bank)의 출범을 필두로 현재 지분은행(Jibun Bank), 소니은행(Sony Bank), SBI수미신넷은행(SBI Sumishin Net Bank), 다이와넥스트은행(Daiwa Next Bank), 라쿠텐은행(Rakuten Bank)의 총 6개 사업자가 영업하고 있다.²⁶⁾ <표 6>은 일본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을 나타낸다. 설립 주

<표 6> 일본 인터넷전문은행 일반현황

법인명	영업개시일	자본금	주요주주 구성	설립 주체
Japan Net Bank	2000년 10월	372.5억엔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41.16%), Yahoo (41.16%)	은행 + 산업자본
Sony Bank	2001년 6월	310억엔	Sony Financial Holdings (100%)	보험
SBI Sumishin Net Bank	2007년 9월	310억엔	Sumitomo Mitsui Trust Bank (50%), SBI Holdings (50%)	은행
Daiwa Next Bank	2011년 5월	500억엔	Daiwa Securities Group (100%)	증권
Jibun Bank	2008년 6월	350억엔	The Bank of Tokyo-Mitsubishi UFJ (50%), KDDI (50%)	은행 + 산업자본
Rakuten Bank	2001년 7월	260억엔	Rakuten (100%)	산업자본

주) 각 社의 홈페이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5a), 천대중(2014a)을 참고하였음.

25) 금융청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은행'에서 제공하는 업무들이 금융기술 혁신의 촉진을 통해 일본 금융산업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으며, 기술의 혁신을 통하여 앞으로도 새로운 형태의 은행들이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였다(출처: 일본 금융청).

26) 그 외의 '새로운 형태의 은행'에는 상업시설(편의점, 쇼핑센터 등)의 ATM을 이용한 금융거래를 제공하는 세븐은행(Seven Bank), 이온은행(Aeon Bank) 등이 있다(서영미,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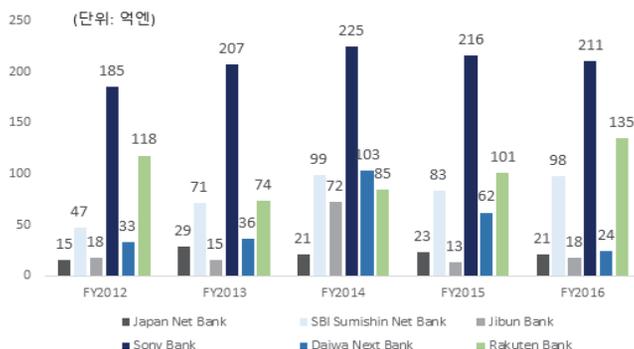
체를 살펴보면 은행뿐 아니라 증권, 보험 등의 비은행 부문과 산업자본에 의한 진출이 활발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소니은행, 다이와넥스트은행, 그리고 라쿠텐은행의 경우 비금융그룹자본이 해당 은행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그 외의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주요주주가 50% 이내의 지분을 보유함에 따라 모기업과의 연계 사업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기가 유용한 특성을 갖는다(서영미, 2015; 이상복·왕상한, 2016; 홍승철, 2017).

〈그림 3〉에서는 일본 인터넷전문은행의 최근 5년간의 당기순이익을 보여주고 있다. 은행별로 추이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이익 창출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인다. 특히 2012회계연도를 기점으로 지분은행, 다이와넥스트은행 등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이 흑자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개선의 추세에 진입하였다(서영미, 2015).

3.2.4 중국

중국에서는 2014년 12월 최초 인터넷전문은행인 위뱅크(WeBank)의 영업개시 이후 총 3개의 인

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였다. 중국 금융당국(은행감독위원회)이 2014년에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 텐센트(Tencent) 등 3개 기업을 민영은행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2017년까지 비준을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총 8개이며, 시중은행이 커버하지 못했던 중소기업, 농가 등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예금, 대출 등의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은행영업을 하고 있다(전수경, 2018). 중국에는 현재 텐센트가 30%의 지분을 보유한 위뱅크와 알리바바의 자회사 엔트 파이낸셜(Ant Financial)이 주요주주로 참여한 마이뱅크(MYbank), 그리고 샤오미(Xiaomi) 및 2개 기업이 공동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설립한 신왕은행(XWBank), 2017년 11월에 출범한 Ai뱅크(Ai Bank)까지 총 4개의 민영 인터넷전문은행이 사업을 한다(이은영, 2017; 자본시장연구원, 2017; 정대·학회연, 2017). 〈표 7〉은 중국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을 나타낸다. 주요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ICT 기업 등 산업자본의 지분 소유가 상당하며, 가장 늦게 출범한 Ai Bank를 제외하면 모두 산업자본 위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산업자본이 주도하는 민영



자료: 각 社 Annual Report

〈그림 3〉 일본 인터넷전문은행의 당기순이익 추이

〈표 7〉 중국 인터넷전문은행 일반현황

법인명	영업개시일	자본금	주요주주 구성	설립 주체
WeBank	2014년 12월	30억 위안	Tencent (30%), Baiyeyuan (20%), Liye (20%)	산업자본 (ICT)
MYbank	2015년 5월	40억 위안	Ant Financial (30%), Fosun (25%), Wanxiang Group (18%)	산업자본 (ICT, 제조업)
XWBank	2016년 12월	30억 위안	New Hope Group (30%), Xiaomi (29%), Hongqi Chain (15%)	산업자본 (제조업)
AiBank	2017년 11월	20억 위안	China CITIC Bank (70%), Baidu (30%)	은행, 산업자본 (ICT)

주) 서봉교(2017), 이은영(2017), 자본시장연구원(2017), 전수경(2018)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은행 설립을 적극적으로 유도한 중국 금융당국의 정책 지원이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중국의 주요 인터넷전문은행인 위뱅크와 마이뱅크는 각각 출범 첫해에는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단기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다(자본시장연구원, 2017). 위뱅크는 2015년 5.8억 위안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2016년에는 약 4억 위안으로 순이익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마이뱅크의 경우 2015년에는 0.7억 위안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가, 2016년에는 3.2억 위안 규모의 순이익을 달성하였다.²⁷⁾ 두 인터넷전문은행 모두 모기업인 ICT 기업의 자본력과 혁신적인 핀테크 기술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영업개시 2년만에 흑자로 전환하면서 성장의 추세에 접어들었다(자본시장연구원, 2017).

3.3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성공 사례

본 절에서는 은행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통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일본의 지분은행(Jibun Bank)

과 중국의 마이뱅크(MYbank) 사례를 통하여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사례를 통해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에 제시하는 시사점을 살펴본다.

3.3.1 지분은행(Jibun Bank)

지분은행은 일본 최대 은행인 미츠비시도쿄UFJ은행(The Bank of Tokyo-Mitsubishi UFJ)과 이동통신사 KDDI가 각각 50%의 지분으로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일본의 인터넷전문은행으로, 2008년 6월 은행업 면허를 취득하여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였다. 지분은행은 사명 그대로 ‘휴대폰에 있는 나 자신(自分; Jibun)의 은행’이라는 의미로 출범하여 젊은 고객층을 공략함으로써 모바일뱅킹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서병호, 2015). 이는 미츠비시도쿄UFJ은행이 지점을 방문하지 않는 2~30대 고객들을 유도하기 위하여 모바일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담은 새로운 영업전략과 동시에, 경쟁기업의 모바일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금융업 진출의 동기를 가진 KDDI가 미츠비시도쿄UFJ은행

27) XWBank 및 AiBank는 각각 2016년 말, 2017년 말에 출범한 관계로 자료가 충분하지 않으며, 적어도 2년간의 수치 비교가 가능한 WeBank 및 MYbank의 순이익을 제시하였다(출처: 각 社 Annual Report).

의 전략을 기술적으로 구현한 것으로, 이는 금융과 산업자본의 영업 노하우가 결합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서병호 외, 2016).

모바일전문은행을 지향하는 지분은행은 물리적 점포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모든 금융서비스를 모바일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더욱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예컨대, 지분은행의 고객들은 모바일을 통해 본인확인을 받은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계좌번호가 아닌 수취인의 전화번호만 알아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모바일 기기에 내장된 지분은행의 통장을 통해 잔액과 입출금 거래명세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그림 4>는 지분은행의 예금 잔액 및 계좌 수 추이를 나타낸다. 영업개시 이후 빠른 고객 유치를 통해 약 2년만인 2010년 95만 개의 계좌와 1,547억 엔의 예금 잔액을 확보하면서 점진적 성장세에 진입하였으며, 2017년 현재 총 7,716억 엔의 예금 잔액과 242만 개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은행의 주요 연혁을 나타내는 <표 8>은 2008

년 영업개시 이후 모바일을 통하여 지속해서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0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자사 금융서비스를 시작한 이후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일본 은행 최초로 스마트폰 인증서비스, 타임라인 기능 탑재, ATM 서비스, AI를 이용한 외화예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등 혁신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3.3.2 마이뱅크(MYbank)

마이뱅크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이자 ICT 기업인 알리바바(Alibaba)의 자회사 안트 파이낸셜(Ant Financial)이 3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 5월 설립하여 같은 해 6월 영업을 개시하였다. 2016년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마이뱅크가 보유한 자본금은 40억 위안이며, 알리바바의 온라인 지급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Alipay)와 연계된 소액대출 서비스는 출시 1년 후 누적 대출금액 492억 위안을 돌파하였다.²⁸⁾ 마이뱅크는 알리바바의 전



자료: Jibun Bank

<그림 4> 지분은행 예금 잔액 및 계좌 수

28) 이코노미조선(2017년 10월), '중국 모바일 결제 9980조원... 작년 한 해 6배 성장, 대출·투자·보험 등으로 영역 확대... 부작용도 급증'을 참고하였음.

〈표 8〉 지분은행의 주요 연혁

연도	주요 내용
2008년 6월	은행업 영업인가 취득
2008년 7월	영업 개시
2009년 5월	외화 예금상품 취급 개시 (미국 달러, 유로, 호주 달러)
2009년 12월	주주 할당 증자 실시 (자본금 275억엔)
2010년 12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제공 실시
2012년 3월	주주 할당 증자 실시 (자본금 350억엔)
2012년 12월	스마트폰용 '퀵 계좌 개설' 어플리케이션 제공 실시
2013년 6월	'지분은행 FX' 제공 실시
2015년 6월	'스마트폰 인증서비스' 일본 은행 최초 개시
2015년 12월	주택담보대출 서비스 제공 실시
2016년 4월	'스마트폰 타임라인' 기능 일본 은행 최초 제공
2016년 10월	주주 할당 증자 실시 (자본금 500억엔)
2017년 3월	'스마트폰 ATM' 서비스 일본 은행 최초 개시
2017년 6월	AI를 통한 외화예측 서비스 일본 은행 최초 개시

자료: Jibun Bank

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Taobao) 등을 이용하여 소형기업에 소액 대출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전자상거래 기업 전용 대출상품 '왕상다이(網商貸)' 등의 주력상품을 이용하여 소규모 기업에 약 879억 위안 규모의 대출을 한다.

이러한 서비스의 바탕에는 마이뱅크가 주요주주인 앤트 파이낸셜(Ant Financial)이 구축한 '즈마신용(芝麻信用)'이라는 빅데이터 기반의 신용평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체 신용등급을 산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데 있으며,²⁹⁾ 주요 고객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가 등 각 대상에게 맞는 대출상품을 개발 및 취급하고 있다(전수경, 2018). 또한, 소액 신용대출 서비스를 위주로 사업을 운영하면서 부실대출을 관리하는 등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을 높이면서

외형을 키워나갔다. 2016년을 기준으로 마이뱅크는 전년 대비 103% 증가한 615.2억 위안의 자산규모를 기록하면서 빠른 외형적 성장세에 진입하였다(자본시장연구원, 2017).

IV.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을 위한 제언

본 논문에서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제도와 가이드라인이 뒷받침된다면, 필요한 규제와 법령은 엄격하게 집행하되, 현행 규제의 적절한 완화도 이루어질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혁신적인 비즈니스 환경의 조성 및 지속 가능한

29) 이코노미스트(2017년 7월), '[김재현의 차이나 인사이트] 중국이 핀테크에서 한국 추월한 이유는'를 참고하였음.

성장을 위하여 다음을 제언한다. 금융위원회 인가 당시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목적 중 하나는 핀테크를 활용하여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은산분리 규제로 인하여 혁신을 주도하는 ICT 기업의 참여유인이 현저하게 낮은 상태에서(이시직·이하정, 2015; 조정래, 2015),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 진입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사업영역의 지속적인 확장과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추구하기에도 여러 제약이 존재한다. 한편, 소유구조의 관점에서 대주주의 사금고화 가능성은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슈라고 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면 그만큼의 법적 규제와 충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 방향과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에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로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은 은산분리 완화 대상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만이 금융위원회 승인 시의 결권 있는 주식의 5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주장하는 반면,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의 지분보유는 최대 34%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안도 존재한다. 또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에게 신용제공을 전면 차단하거나 혹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정희수, 2015; 조대형, 2016).

더불어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는 금융소비자에게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저신용자 대상의 중금리 대출시장 진출을 통해 금리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맞아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 초기인 현재로서는 고신용자 위주로 대출상품을

취급함에 따라 출범 당시의 목표와는 다소 거리가 존재하며, 자본확충이 논의되는 시점에서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필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2018a)에서는 올해 초 '포용적 금융'의 정책기조에 따라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중금리 대출규모를 확대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인터넷전문은행의 연간 대출규모를 기존의 약 1조 원에서 2022년까지 3조원 이상으로 3배 이상 늘리기로 했는데, 이는 5대 금융그룹에 부여된 연간 약 2조 5천억원의 규모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금융당국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은 중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타 금융기관(5대 금융그룹,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기관 등)과는 차별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이 분명하게 제고되어야 한다.

중금리 대출상품의 원활한 취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리 공백에 놓여있는,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의 경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정보비대칭(information asymmetry)으로 인하여 대상을 선별하기가 어렵고, 그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위험 때문에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쉽게 진입하는 것 또한 쉽지 않다(금융위원회, 2016).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의 핵심 역량은 핀테크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정보비대칭을 완화하며 금융소비자에게 합리적인 중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당국은 IT, 통신, 유통사 등 인터넷전문은행 주주사의 정보 및 신용평가기관의 신용정보와 인터넷전문은행이 자체 보유한 고객 정보를 결합하여 빅데이터를 생성하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적절한 신용평가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금

금융위원회, 2018a). 이를 기반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대출시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공급자 역할의 수행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한국은행의 금리인상에 따른 시중은행의 여수신 금리인상의 기초, 추진예정인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사업 등의 각종 신사업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자본확충을 통하여 혁신적 기술과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장을 위한 필요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ICT 기업의 주도하에 핀테크 등을 통한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도입과 충분한 제도적 보완장치가 뒷받침되고, 은산분리의 목적과 취지는 지켜내는 규제를 하면서도 적절한 완화를 통한 제도의 운용으로, ICT 자본이 실질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을 경영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금융시장 및 자본시장 규제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집행하고, 금융과 기술의 융합을 촉진하여 자본시장의 핀테크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금융위원회, 2018b), '디지털 전환'의 흐름 속에서 핀테크를 활용하여 간편결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면서 향후 금융시장의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과 더불어 위험관리 역량의 제고에 대한 필요성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운영의 특성상 고유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강현구 외, 2017; 구분성, 2008; 김은수, 2015; 김태호 외, 2008; 이상복·왕상한, 2016). 예컨대, 인터넷전문은행은 해킹 등 보안관련 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운영리스크, 비대면거래의 영업방식으로 인한 고객응대 문제, 전산장애 등 신뢰도와 직결되는 평판리스크 등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기존 금융기관 대비

취약한 리스크관리 기반을 확고히 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앞서 살펴보았던 지분은행, 마이뱅크 등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사례와 같이, 금융과 산업자본의 결합은 기존의 은행들과는 다른 인터넷전문은행의 차별화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성공적인 사업모델을 안착시켜 외형적 성장과 함께 금융혁신을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은 핀테크로 대변되는 혁신적 기술에 기반을 둔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중금리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차별화된 고객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생존과 더불어 기존 금융기관 및 여러 핀테크 기업들 사이에서의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기술과 금융의 융합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선순환적 환경도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과 법 및 제도적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특히, 일본의 지분은행, 중국 마이뱅크 등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사례 및 제도적 현황을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완전 비대면거래를 지향하며 출범한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은 전통적 금융기관이 아닌 국내 유수의 ICT 기업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규제에 의한 자본 상의 제약으로 기존 은행에 맞서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도모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자본 소유를 제한하는 은산분리 규제의 완화 문제를 두고 찬성과

반대의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다. 다만, 자본확충의 어려움으로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장기적 성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좁게는 은행산업, 더 나아가서는 금융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주도한다는 점과 금융소비자들의 편익을 높인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제도적 보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고,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인터넷전문은행의 또 다른 역할은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중금리 대출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금리 공백을 해소하는 데 있으나, 현재 고신용자 위주의 대출을 통한 예대마진 위주의 수익사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을 띠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 시장에서의 원활한 공급기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도 은산분리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의 규제 완화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금융기관들에 맞서 새롭게 등장한 인터넷전문은행의 혁신과 발전을 위해서는 비교적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금융의 기술의 적극적인 융합을 통해 새로운 금융산업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본 연구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을 논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사례와 규제를 위주로만 제시되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남는다. 또한, 만약 은산분리 완화가 이루어진다면 법적, 제도적 측면의 쟁점사항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의 역사가 1년 남짓한 상황에서, 향후 여러 가지 신사업들이 안정화되는 등 일정 기간이 지나 인터넷전문은행의 운영 관련 제반사항이 대체로 정비되는 시점에서 관련 데이터를 이용한 실증적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정교한 수준에서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많은 금융소비자의 시선을 끌며 출범하였지만, 현재 성장이 다소 정체된 인터넷전문은행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경영전략 측면에서 세분되고 구체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금융위원회(2015a),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경쟁력있는 금융업을 만들겠습니다,” 2015년 업무계획.
- 금융위원회(2016), “사이트들 중금리 대출 출시 Q&A,”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2018a), “2018년 포용적 금융 정책방향·중금리대출 활성화 계획,”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2018b), “핀테크로 금융혁신 이끈다 -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 추진,”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5a), “IT·금융 융합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방안,”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5b),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됩니다. 보다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손쉽게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5c),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는 혁신성 위주로 심사합니다,” 보도참고자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5d),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 개정,”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6), “(주)케이뱅크은행(제1호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업 인가,”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7a), “카카오뱅크, 1월 6일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 보도참고자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7b), “금융위원회, 한국카카오은행(주)에 대한 은행업 인가,”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2017c), “인터넷전문은행 최근 동향과 금융권 대응 움직임,” 보도참고자료.
- 카카오뱅크(2018), “2017년 한국카카오은행 현황,” 2017년.

- 케이뱅크(2018), “케이뱅크은행 현황,” 2017년.
- 한국은행(2017a), “최근 인민은행의 인터넷금융 관련 관리 및 감독 방향,” 국외사무소자료(북경사무소).
- 한국은행(2017b), “금융안정 상황 (2017년 9월),” 보도자료.
- 한국은행(2018), “2017년중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 현황,” 보도자료.
- 강서진(2014),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동향 및 국내 이슈 점검,” **KB지식비타민**, 73,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1-7.
- 강현구·유주선·이성남(2017), “핀테크와 법,” 씨아이알, 서울.
- 고동원(2017), “은산분리, 원칙인가? 족쇄인가?: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토론회.
- 구본성(2008),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정책조사보고서**, 3, 한국금융연구원, 1-80.
- 김규수·전봉걸(2016), “인터넷뱅킹 확산이 은행 경영성과에 미친 영향 및 시사점,” **한국경제의 분석**, 22(1), 143-206.
- 김민식·손가녕(2017), “제4차 산업 혁명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의 이해,” **정보통신방송정책**, 29(3), 26-32.
- 김병덕(2010), “바젤Ⅲ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증권학회 2010년도 제5차 <증권사랑방> 발표자료**.
- 김우진(2018), “주요 글로벌 은행들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특징과 시사점,” **주간 금융브리프**, 27(5), 한국금융연구원, 3-7.
- 김은수(2015),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관한 소고,” **상사판례연구**, 28(3), 157-191.
- 김자봉(2015), “핀테크와 금융규제혁신의 바람직한 방향,” **주간 금융브리프**, 24(17), 한국금융연구원, 12-13.
- 김정환(2017), “핀테크 산업의 발전과 금융교육의 필요성,” **주간 금융브리프**, 26(20), 한국금융연구원, 16-17.
- 김태호·박태형·임종인(2008),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시 예상되는 전자금융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정보보호학회지**, 18(5), 33-48.
- 서봉교(2017), “중국 핀테크산업 성장과 규제 완화,” **정책연구**, 27, 한국경제연구원, 1-60.
- 서병호(2011), “국내 기업의 해외 은행업 진출에 대한 검토,” **KIF 금융리포트**, 4, 한국금융연구원, 1-51.
- 서병호(2015),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세미나 발표자료**, 한국금융연구원.
- 서병호·이수진·이윤석(2016), “해외 인터넷전문은행의 사례분석과 시사점,” **KIF 금융리포트**, 한국금융연구원, 1-157.
- 서영미(2015), “日 인터넷전문은행의 계열증권사와의 시너지 제고 사례,” **조사연구**, 금융투자협회, 1-24.
- 이광상(2017), “일본의 핀테크 촉진을 위한 금융법제 정비 방향,” **주간 금융브리프**, 26(22), 한국금융연구원, 19-20.
- 이대기(2017),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 **The Banker**, 은행연합회, 6-13.
- 이상기·김보영(2015), “스마트폰뱅킹 활성화를 위한 모바일 지갑 서비스 개발: 하나은행 N Wallet 사례를 중심으로,” **KBR**, 19(1), 157-182.
- 이상복·왕상한(2016), “주요국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과 그 법적 시사점,” **법학논총**, 33(1), 303-339.
- 이성복(2015), “미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퇴출 특징 분석,” **자본시장리뷰**, 자본시장연구원, 107-124.
- 이성복(2016), “미국 인터넷전문은행의 사업성과 분석 및 시사점,” **연구보고서**, 1, 자본시장연구원, 1-119.
- 이수진(2015a), “미국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사례 및 시사점,” **주간 금융브리프**, 24(21), 한국금융연구원, 12-13.
- 이수진(2015b), “독일 Fidor Bank 사례로 살펴본 인터넷전문은행의 지향점,” **주간 금융브리프**, 24(48), 한국금융연구원, 10-11.
- 이시직·이하정(2015),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 최저자본금 및 은산분리 규제를 중심으로,” **정보통신방송정책**, 27(16), 1-23.
- 이윤숙·신미경(2016), “중국 핀테크산업의 특징과 시사점,” **국제경제리뷰**, 5, 한국은행, 1-16.

- 이은영(2017), “중국의 인터넷전문은행 동향과 銀産結合 정책 배경,” *Weekly KDB Report*, KDB산업은행, 9-10.
- 자본시장연구원(2017), “중국 인터넷전문은행의 현황 및 평가,” *중국 금융시장포커스*, 2017년 여름호, 38-42.
- 장은지(2018), “한국형 애자일 조직, 클라우드 협업 톨로 시작하라,” *Harvard Business Review Korea*, 3-4월 합본호.
- 전수경(2018), “중국 핀테크 산업의 발전 현황과 정책 방향,” *KIEP 기초자료*,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8.
- 전주용 · 여은정(2015),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이 국내 은행 산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조직론 관점에서의 분석,” *금융연구*, 29(4), 199-234.
- 정대 · 학회연(2017), “영국과 중국의 핀테크산업 규제법에 관한 연구: 인터넷전문은행과 대출형 P2P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41(2), 281-315.
- 정희수(2015),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의 법적 이슈와 영향,” *금융법연구*, 12(3), 3-35.
- 조대형(2016),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현황과 개선과제,” *현안보고서*, 300, 국회입법조사처, 1-51.
- 조영서(2015),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사업모델 및 시사점,”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세미나 발표자료, Bain & Company.
- 조정래(2015),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 소유구조 개선 방안,”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 세미나 발표자료, 법무법인 태평양.
- 주강진 · 이민화 · 양희진 · 류두진(2016), “핀테크 산업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증권학회지*, 45(1), 145-170.
- 주강진 · 이민화 · 양희진 · 류두진(2017),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현황, 사례, 규제에 대한 개괄적 고찰,” *한국경영과학회지*, 42(4), 1-14.
- 천대중(2014a), “해외 인터넷전문은행 동향 및 시사점,” *주간 금융경제동향*, 4(3), 우리금융경영연구소, 7-12.
- 천대중(2014b), “미국 인터넷전문은행 제도 및 현황,” *주간 금융경제동향*, 4(50), 우리금융경영연구소, 10-13.
- 최공필 · 안창현(2016), “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 *한국경제의 분석*, 22(2), KIF 한국금융연구원, 45-101.
- 홍승철(2017), “해외 주요 인터넷전문은행 성공사례 및 시사점,” *금융리스크리뷰*, 14(2), 예금보험공사, 62-76.
- DeYoung, R.(2001a),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Pure Play Internet Banks,” *Economic Perspectives*, 25(1), 60-75.
- DeYoung, R.(2001b), “Learning-by-Doing, Scale Efficiencies, and Financial Performance at Internet-Only Banks,” *Working Paper*, Federal Reserve Bank of Chicago, 1-55.
- EY(2017), *EY FinTech Adoption Index 2017: The Rapid Emergence of FinTech*.
- Latimore, D. and S. Greer(2015), “FIDOR: Celent Model Bank of the Year 2015: Case Studies of Effective Technology Use in Banking,” Olyver Wyman.
- Yom, C.,(2005), “Limited-Purpose Banks: Their Specialties, Performance, and Prospects,” *FDIC Banking Review*, 17(1), 19-36.

Internet-only Banks: An Introductory Overview

Chaejin Park* · Doojin Ryu**

Abstract

With the advance of FinTech, that is, the convergence of finance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Kbank and Kakao Bank, the internet-only banks in Korea, have been launched. Established and operated by leading ICT companies in Korea, these internet-only banks are entirely aiming for non-face-to-face transactions with no restrictions on time and space through mobile platforms. By providing exceptionally low interest rates and innovative financial services, internet-only banks challenge traditional banks. However, the development of internet-only banks is expected to stagnate slightly due to the lack of relevant policy, which supports efficient operation of internet-only banks, and some regulations such as the segregation system, which restricts the ownership of industrial capital by bank.

In this paper, we examine some cases and regulations of internet-only banks overseas and outline their history and industrial environments. Some internet-only banks overseas create synergy through collaboration with affiliates under appropriate regulatory and support systems, or actively use FinTech, given the capital and technological power of ICT companies, to lead the development of relevant industries. Moreover, they have innovated differentiated, new financial services market. To cope with the long-term development of the domestic internet-only bank industry and the innovations required by the financial industry as a whole, adequate regulation and policy environment are needed. Meanwhile, the companies that have potential technologies should actively discuss the use of FinTech.

Key words: Internet Only Bank, FinTech, Regulation, Financial Industry

* Researcher, NH Finance Research Institute, NongHyup Financial Group, First Author

** Tenured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Sungkyunkwan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저자 박재진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재무(Finance) 전공으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위촉연구원을 거쳐, 현재 NH농협금융지주 NH금융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디지털 금융, 금융회사 경영전략, 기업지배구조, 금융기관 등이다.
- 저자 류두진은 서울대 전기공학부를 졸업하고 KAIST 경영대학원에서 재무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민연금공단 부연구위원, 한국외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를 거쳐, 현재 성균관대 경제학과에 정년보장 교수로 재직 중이며, 스포츠과학대학 교수로 겸직하고 있다. SSCI 학술지인 Investment Analysts Journal의 Editor이며, Emerging Markets Review의 Associate Editor이다. 연구 분야는 재무론 및 금융시장미시구조, 파생금융상품시장, 핀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포함한다.